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  
**6.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

제 44 (당) 기 2007년 12월 31일 종료회계연도  
제 43 (전) 기 2006년 12월 31일 종료회계연도

**1.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서울특별시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의하여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장부의 기록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주요 회계처리방침**

2-1 대손충당금

대차대조표일 현재 수용가미수금 및 기타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과거 3년간 대손경험율을 기준으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2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수량은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실지재고조사에 의한 실사수량과의 차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3 유형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1968년부터 5년주기로 2003년까지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2007년 3월 9일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자산재평가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하고 간접법에 의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가동중지 상태에 있는 정수장, 잡종재산 등은 기타비가동설비자산으로 구분하고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 중의 기타(운휴자산)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있으며,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등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금융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와 공기업법 결산지침의 적용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적용 및 환산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으며,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2-5 연 금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봉급예산총액의 14.0%를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2-6 수익의 인식기준

수익의 인식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수익의 조사결정한 날로 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구경별 정액요금은 영업수익의 급수수익으로, 수용가로부터 급수시설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급수공사수입 중 당기공사 준공분에 대해서는 급수공사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타회계전입금은 소방용수시설요금감면 보전금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요금감면보전금의 일반회계전입금과 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수수료의 타특별회계전입금을 당기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2-7 퇴직급여충당부채

당년도부터 지리정보과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설정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용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해당 연도의 퇴직급여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현금 및 예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 및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예 금 종 류	제 44(당) 기	제 43(전) 기
세 입 세 출 현금	공 공 예 금	237,514,458	219,455,633
세 입 세 출 외 현금	별 단 예 금	11,423,971	7,576,560
계		248,938,429	227,032,193

위의 현금과 예금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중은행에서 수납한 수입금을 시금고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집계하여 2008년 1월 15일에 상수도 사업본부 공공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한 현금과 예금 52,99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08년 1월 15일까지 인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4. 수용가미수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용가미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천원)	
	제 44(당) 기	제 43(전) 기
2002년 이전 발생분	197,756	582,844
2003년 발생분	389,038	475,434
2004년 발생분	510,979	833,649
2005년 발생분	592,724	1,619,672
2006년 발생분	1,156,996	16,324,769
2007년 발생분	14,702,302	-
계	17,549,795	19,836,368
대 손 총 당 금	(-)327,504	(-)317,382
잔 액	17,222,291	19,518,986

#### 5. 기타 미수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 미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천원)	
	제 44(당) 기	제 43(전) 기
2002년 이전 발생분	1,395,088	1,958,731
2003년 발생분	2,079,482	3,250,052
2004년 발생분	286,796	613,818
2005년 발생분	363,786	421,206
2006년 발생분	415,364	1,077,956
2007년 발생분	774,673	-
계	5,315,189	7,321,763
대 손 총 당 금	(-)229,130	(-)234,296
잔 액	5,086,059	7,087,467

당기말 현재 기타미수금 잔액 중에는 토지연부매각대금 미수금 1,702,201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장기차입금

##### 6-1 국외지방채 증권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중 국외지방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44(당) 기

(원화단위: 천원)

구 분	이자율	상환조건	만기일	외화금액	원화금액
사무라이본드	0.39~1.37%	1~7년	2009. 12. 26	JPY 10,549,497	87,912

- 제 43(전) 기

(원화단위: 천원)

구 분	이자율	상환조건	만기일	외화금액	원화금액
사무라이본드	0.39~1.37%	1~7년	2009. 12. 26	JPY 31,648,491	247,437
유동성대체액				(-)21,098,994	(-)164,958
잔액				JPY 10,549,497	82,479

6-2 재정자금

재정자금은 서울시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44(당) 기

(단위: 천원)

차입종류	차입처	연이자율	최종만기일	상환조건	금 액
시재정투융자기금	서울시	4.2%	13. 12. 15	5년거치 5년균등	126,380,000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환경부	3.8~ 6%	16. 12. 20	5년거치10년균등	23,100,000
계					149,480,000
유동성대체액					(-)37,140,000
잔액					112,340,000

유동성대체액은 시재정투융자기금 34,440,000천원과 재정투융자기금 2,700,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 43(전) 기

(단위: 천원)

차입종류	차입처	연이자율	최종만기일	상환조건	금 액
시재정투융자기금	서울시	4.2%	13.12.15	5년거치 5년균등	177,100,000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환경부	3.8~ 6%	16.12.20	5년거치10년균등	25,800,000
계					202,900,000
유동성대체액					(-)53,420,000
잔액					149,480,000

유동성대체액은 시재정투융자기금 50,720,000천원과 재정투융자기금 2,700,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3 장기차입금의 상환일정

상기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 도 별	국외지방채증권	시 재 정 투 융 자 기 금	재 정 투 융 자 특 별 회 계	합 계
2 0 0 8 년	-	34,440,000	2,700,000	37,140,000
2 0 0 9 년	87,912	22,840,000	2,700,000	25,627,912
2 0 1 0 년	-	22,840,000	2,700,000	25,540,000
2 0 1 1 년	-	22,840,000	2,700,000	25,540,000
2012년 이후	-	23,420,000	12,300,000	35,720,000
계	87,912	126,380,000	23,100,000	149,567,912

## 7. 자본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천원)	
	제 44(당) 기	제 43(전) 기
원 시 자 본 금	3,497,948	3,497,948
자 본 전 입	254,600,314	254,600,314
	258,098,262	258,098,262

원시자본금 3,497,948천원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 조례 부칙 ①에 의하여 1964년 1월 1일 현재로 확정된 자본금입니다. 자본전입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40조 1항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강제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 8.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8-1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을 계상한 것으로 자산재평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1968년부터 5년마다 2003년까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당기 변동액은 강북구 미아동 산19-80 외 5필지 토지를 2003년 재평가시 토지 기준시가 적용의 오류와 관련한 수정으로 인한 변동내역입니다.

계 정	(단위 : 천원)		
	전기말장부가액	변동액	당기말장부가액
재 평가 적 립 금	1,631,247,657	(-)7,314,233	1,623,933,424

### 8-2 타회계보조금

타회계보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입니다.

### 8-3 기부금

기부금은 수용가가 자기비용으로 설치한 급수장치를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8조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에 기부체납한 자산 및 일반회계로부터 토지를 관리이관 받은 금액입니다.

### 8-4 시설분담금

시설분담금은 급수장치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수용가로부터 받은 건설 조성금입니다.

## 9. 이익잉여금

### 9-1 이익적립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이익금의 1/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여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이익적립금은 결손보전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9-2 건설적립금 및 감채적립금

건설적립금은 건설 또는 개량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채적립금은 차입금 상환의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의해 결산상 순이익발생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이익적립금으로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1/10이상을 적립하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에 따라 익년도 차입금 상환액 상당금액을 감채적립금으로 계상하며, 처분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의 8/10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10. 급수수익

당기와 전기의 급수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제 44(당) 기	제 43(전) 기
가	정	용	261,410,093	263,884,082
업	무	용	57,167,225	56,583,639
영	업	용	236,826,831	236,515,150
대	중	목	13,488,870	14,429,664
전	용	공	65,573	64,850
기		타	8,858,996	9,737,328
계			577,817,588	581,214,713

## 11. 전기오류수정손익

당기말과 전기말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내 용	제 44(당) 기	제 43(전) 기	
전기손익수정이익	과년도 유형자산가액 증가	5,531,417	-	
	과년도 재평가적립금 감소	1,574,105	5,932	
	과년도 기타미수금 조정액	12,616	67,087	
	과년도 기타미수금 조정액	28,591	26,814	
계		7,146,730	93,901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년도 유형자산가액 감소	1,012,069	3,626,074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조정액	436,701	10,671	
	과년도 기타미수금 조정액	183,439	72,517	
	전화가입권 감소	1,694	-	
계		1,633,902	2,175,109	

당기분 전기오류수정이익에는 이전년도에 취득하였으나 회계처리가 누락된 토지 및 건물 오류금액 5,531백만원과 잘못된 기준시가로 재평가된 토지가 이전년도에 처분되면서 발생한 오류금액 1,57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오류수정손실에는 이전년도에 처분하였거나 이중취득 계상된 토지 및 건물 오류금액 1,01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식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년도부터 일용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전기 이전에

계상하지 않은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32백만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 과목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표시 하였습니다.

## **12. 기타특별손실**

기타특별손실은 북부수도사업소 소관 번동배수지 폐쇄로 인한 철거비용 978백만원, 영등포정수장 재건설과 관련하여 1,2공장 폐쇄로 인한 손실 8,403백만원으로 결산지침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습니다.